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위성곤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31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2.

발 의 자 : 위성곤 · 조계원 · 이학영
박균택 · 윤준병 · 김기표
최혁진 · 정진욱 · 노종면
문대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할 수 있음.

그런데 2025년 3월 대형 산불 발생 시 구체적인 대피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산불의 확산 현황을 확인하지 못해 오히려 산불이 확산 중인 곳으로 대피하는 문제가 있었고, 안전취약계층의 경우 대피에 어려움이 있어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음.

이에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대피명령을 한 경우 대피장소에 인력을 배치하고,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, 문자 등을 통해 재난의 예보·경보·통지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그 내용에 대피장소 등 대피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

수 있게 하는 등 대외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의2 및 제40조).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인한 안전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피장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제4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대피명령을 한 경우 대피장소에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고,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한 경우 제3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예보·경보·통지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그 내용에 대피장소 등 대피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의2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) ① ~ ④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31조의2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) ① ~ ④ (현 행과 같음) <u>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 난으로 인한 안전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피장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을 수립 · 추진하여야 한다.</u>
제40조(대피명령) ① .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40조(대피명령) ① . ② (현행 과 같음) <u>③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지역 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대피 명령을 한 경우 대피장소에 인 력을 배치하여야 하고, 안전취 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 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④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지역 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른 대피 명령을 한 경우 제38조의2제3 항 및 제4항에 따른 예보·경 보·통지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그 내용에 대피장소 등 대피명</u>

	<u>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</u> <u>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</u> <u>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</u> <u>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</u>
--	--